

##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7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지방채 발행실적이 없거나 원리금상환이 완료되어 존치의의가 상실된 지방채 관련조례 정비.

###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  
'88올림픽이 끝난후 내무부 준칙에 의거 '88. 10. 14 제정된 조례로서  
우리도는 지방채 발행 실적이 없으므로 동조례 폐지
- 충청북도재해복구공채조례  
'87. 12. 18. '87재해복구사업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'88. 4.  
30 공채 82억원을 발행하여 '90. 12. 29 원리금 상환완료로 동조례 폐지
- 충청북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  
'87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'88. 7. 1 제정되어 '89.  
10. 19. 공채 36억 발행, '90. 12. 29 원리금 상환완료로 동조례 폐지
- 충청북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  
'88 재해복구사업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'88. 11. 25 제정되어 '89. 6.  
30. 45억원 지방채 발행하여 '92. 6. 30한 원리금 상환으로 동조례 폐지
- 충청북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  
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재원조달을 목적으  
로 '88. 10. 14 제정되었으나 제정후 지방채 발행 실적이 없으며, '90. 12.  
31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되어 양여금으로 전액 충당되므로 동조례 폐지

첨 부 :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 1부

##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

제 1 조(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(조례 제1652호, 1988. 10. 14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2 조(충청북도재해복구공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재해복구공채조례(조례 제1266호, 1987. 12. 18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3 조(충청북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(조례 제1662호, 1988. 7. 1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4 조(충청북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(조례 제1662호, 1988. 11. 25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5 조(충청북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(조례 제1651호, 1988. 10. 14)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